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55
----------	------

2018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 외 19명
- 나. 발 의 일 : 2018년 3월 23일
- 다. 회 부 일 : 2018년 3월 27일
- 라. 상 정 일 : 제28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4월 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광수(도봉)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특성상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내용

-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입법예고(2018.3.30. ~ 4. 6.)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제3조제2항)은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자격요건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

<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생략) ② 검사위원은 <u>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u>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u> 중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를 보면, 서울시 거주자 이외에 근무지가 서울인 사람도 결산검사위원회에 선임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보다 폭넓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현행 검사위원의 거주제한은 서울시에 관심을 가진 거주자로서 결산검사를 주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회계법<sup>1)</sup>에 따라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1)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제5조(독립성) ① 검사인은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회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이해관계에 따른 감사위원의 독립성 유지에 제약 요인은 없었는지, 결산검사 전문가 선임 범위를 한정하여 의장의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이 제약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감안하여 자격요건의 완화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결산검사위원의 업무수행에 독립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전문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지역 연고 요건(거주하거나 근무지 연고 등)을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sup>2)</sup>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현 17개 광역시도 중 감사위원의 해당 지역예의 거주요건을 둔 자치단체는 5곳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재무국은 개정안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라는 자구 중 ‘기관’의 의미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무지가 서울특별시 내인 사람’으로 수정하여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결산 관련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주제한 요건 완화 및 폐지가 결산검사위원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위촉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중복 위촉될 경우 신분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개정조례안은 보다 폭넓은 전문가 위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검사기간 중 다른 자치단체 감사위원 위촉시 신분상실(조례 제5조제1항제3호)

---

2) 한국정부회계학회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내실화 방안(2012.9.)’ 188쪽, 199~200쪽 참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5
----------	------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23일

발 의 자 : 김광수(도봉) 의원 (1명)

찬 성 자 : 송재형, 박호근, 박기열, 서윤기,  
김동율, 황규복, 김제리, 김희걸,  
김인제, 김용석(도봉), 김진철, 문영민,  
조상호, 박진형, 신원철, 이창섭,  
김정태, 강감창, 문형주 의원(19명)

##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회를 선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특성상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함  
(안 제3조제2항)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참조)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생략)</p> <p>② 검사위원은 <u>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u>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 5. (생략)</p>	<p>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u> 중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